

'다원 그룹(구 적준)' 회장 1천억 횡령 사건 관련,
개발/철거비리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폭력철거 업체 '다원그룹(구 적준)' 피해자 증언대회

일시: 2013년 7월 25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주최

강제퇴거금지법제정위원회(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전국철거민연합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증언대회 취지

- 최근 대표적인 폭력 철거업체 ‘다원그룹’ 회장이 1000억을 횡령, 도피하다가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 ‘다원’은 한국 폭력철거 용역의 시초인 ‘입산’에서 ‘적준’으로 분화하여, 90년대 서울 철거지역의 80%를 장악하며, 폭력철거를 자행한 대표적인 폭력조직 출신 철거용역 업체임.
- 당시 ‘적준’(이후 ‘다원’)의 철거폭력이 심각하여, 인권/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다원건설(구 적준) 사법처리를위한 공대위’까지 구성하여 활동하였음. 현재도 다원은 철거업체 도급 순위 1위의 대표적인 철거 업체 임.
- 한국의 대표적 철거폭력 업체인 다원그룹 회장의 비리가, 회장 등 개인의 횡령비리 사건으로 마무리되거나, 현재 구속 기소된 세무 공무원 몇몇의 뇌물비리로 끝나지 않고, 개발/철거사업의 비리의 커넥션을 파헤치는 계기가 되어야 함.
- 또한 오는 7월 25일은 ‘다원(당시 적준)’ 용역폭력에 의해 사망한 ‘故 박순덕 열사¹⁾’의 16주기 추모 기일이기 함. 이에 ‘다원’ 용역폭력에 의해 사망한 박순덕열사의 추모기일에, ‘다원’ 폭력철거 피해자 증언대회를 개최, 폭력철거 업체의 시초이자 대표인 ‘다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다원과 연관된 정관계 개발/철거 비리의 커넥션을 철저히 규명/처벌하여, 강제퇴거를 근절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하고자 함.

증언대회 순서 (사회 :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 발표1 : ‘다원’과 철거용역 폭력의 구조 (이원호 /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 발표2 : ‘다원’ 수사, 강제퇴거금지의 계기로 삼아야 (미류 / 인권운동사랑방)
 - 피해 증언1 : 김포 신곡지구 (조규승/ 전철연 신곡6지구 상공철대위 위원장)
 - 피해 증언2 : 북아현뉴타운1-3구역 (이선형 / 북아현뉴타운1-3구역 위원장)
 - 피해 증언3 : 봉천동 12-2구역
- * 주최 : 강제퇴거금지법제정위원회(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전국철거민연합,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 故 박순덕 열사 추모제 >

- 일시 : 2013년 7월 25일(목), 16시 30분
- 장소 : 전농동 박순덕열사 추모비 앞(전농동 sk아파트)
- * 주최 : 전국철거민연합
- * 7월 25일은 1997년 ‘다원(당시 적준)’ 용역의 방화살인으로 사망한 전농동 철거민 ‘故 박순덕 열사’(p20 참조)의 16주기 추모 기일이기 합니다.
증언대회 후 오후에 추모제가 진행됩니다.

1) 1997년 7월 25일 철거반대 철탑망루 농성 중 <다원>용역 소속 철거깡패들이 페타이어 등으로 방화를 하고 화염병을 투척하자 질식사를 피하기 위해 저항하던 중 불길에 휩싸여 투신, 운명 (p20 참조)

<다원>과 철거용역 폭력의 구조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 강제퇴거금지법제정위원회)

우리는 철거폭력에 대해 '안돼! 이제, 그만!'이라고 말하기 위해 이 자료집을 준비하였습니다. 주변의 분들과 함께 읽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부를 축적하기 위해 폭력을 휘두르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 폭력 앞에서 피눈물을 쏟는 악순환을 우리들의 참여와 관심으로 막아냅시다. _ [다원건설(구 적준용역) 철거범죄 보고서 (이하 다원보고서) 中 '자료집을 펴내며', 1998. 다원건설 사법처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1990년대 재개발현장을 독점하며 폭력/살인 철거로 악명이 높던 '적준(현 다원)'의 철거범죄를 기록하고 사법처리를 촉구하며 '안돼! 이제, 그만!' 외쳤지만, 2013년 현재까지 철거폭력의 시간은 그대로이다.

뿐만 아니라 그 악명 높던 '적준'은 처벌은 커녕, '다원건설'로 이름을 바꾼 이후, 13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다원그룹'으로 성장했다. 현재 '다운그룹'은 (주)다원환경, (주)다원이앤아이, (주)다원이앤씨 등의 철거업체와 (주)새날, (주)새날C&P 건설시행업체를 세워 도시개발 시행 사업에도 진출했으며, 중견 건설사 (주)청구도 인수하여 건설 시공사로까지 진출하는 등 시행, 시공, 철거 등 개발사업 전반으로 세를 확장하였다.

'입산', '적준'... 그리고 '다원'과 후예들

철거용역 회사의 시초는 1986년 12월 설립된 '(주)입산개발'로 알려져 있다. 1983년부터 민간이 주도하는 '합동재개발'방식이 도입되면서 철거를 대행하는 용역회사가 들어서게 된 것이다. 이후 입산에서 일했던 이들이 나와 1990년 '(주)적준 토건'을 만들면서 철거용역 회사로 이름을 날리며, 90년대 중반부터 재개발지역의 철거업무를 독점하다시피 했다.

"적준의 성공으로 조직폭력배들은 철거용역회사라는 합법적인 사업을 통해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이를 위해 자신들의 조직을 활용하여 지역 강패들을 끌어들여 철거회사를 만들어간다. 적준이나 입산 등지에서 일을 배운 폭력배들이 동네 건달들을 모아 한탕을 노리며 신생 용역사를 설립하여 조합과 결탁하게 되는 것이다." (다원보고서)

철거용역업으로의 진출을 그들은 '음지에서 양지로...'라고 표현한다. 이는 조직 폭력배에서 이제는 엄연한 주식회사의 임직원으로 진출한 것에 대한 표현이다. 그러나 이들의 인력동

원 방식은 여전히 각지의 폭력배들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개발현장에서 나타나는 철거용역업체들은 대부분 '입산'과 '적준'의 주요 임원들이 분화하여 세운 업체들이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라고 하는 철거업 관련 도급순위 1위인 '다원E&I'는 (구)적준용역(다원건설)이고, 도급 2~3위권인 '참마루건설'은 다원에서 분화하였으며, 용산4구역에서 문제를 일으킨 '호람건설'은 다원에서 분화한 참마루에서 다시 분화하여 만들어 졌다.

현재 서울지역 재개발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다원', '참마루', '삼오진', '유에스(유폴)', '호람', '대길공영', '비조', '태형E&C', '세경D&C', '우진미래로' 등은, 인적 뿌리부터 '입산'과 '적준'의 후예들이거나, 그들을 모델화하여 생겨난 업체들이다.

<현재 서울지역 정비사업 철거업체 선정 현황>

(2013.07.19, 서울시 클린업시스템 확인 기준 / 자료제공 노동당 서울시당)

철거업체	해당구역 (총 605개)
비공개 및 미 계약	505개
다원 이앤씨, 다원 이앤아이	25개
삼오진	15개
참마루	11개
호람	7개
대길공영	5개
우진미래로	4개
태경이앤씨	3개
미강이앤지	2개
경북전기, 고운이앤씨, 금호, 다현, 도성, 동부, 명성에너지, 비조이앤지, 백주, 성면, 성일, 성한지앤아이, 신대원, 센트로, 시원이앤지, 우림토건, 이이비라인, 어진, 우미, 우주, 유이씨앤씨, 태운, 효창이앤씨	각1개

* 계약사항이 공개된 100개의 사업구역 중 25%가 다원그룹과 계약되었음.(목록 별첨)

■ 다원그룹 현황

23일(7월) 1000억대를 횡령하고 도피 중이던 다원그룹 회장 이금열이 체포되었다. 지금까지 발표로 보면, 이금열 회장은 다원이앤씨와 다원이앤아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여 골프장들을 조성하고, 다원환경은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뇌물을 공여했으며, 13개의 계열사들을 통해 배임, 횡령,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아래 다원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을 살펴보면 주요 임원들은 서로 긴밀한 관계로 엮여있다. 회사 간 서로 임무를 바뀌가며 등장하고, 기존의 <다원 보고서>를 보더라도 주요 임원들은 대체로 형제, 친척간이거나 형제와 다를 바 없는 관계 즉, 폭력조직에서처럼 형과 아우의 관계로 맺어져, 사실상 족벌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주)다원이앤아이

설립일자: 2006년 3월 21일

업종 : 전문직별공사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

주요임원 : 이중열(대표이사), 박재희(이사), 이제태(이사), 임훈희(감사)

주요주주 : 박건호(경영실권자), 최만기, 박재희, 임훈희, 기타
상시종업원 : 200명 (09년 200명, 2010년 44명, 2011년 200명)
*2006년 박건호, 2011년 이증열 대표이사

(주)다원이앤씨

설립일자 : 2001년 11월 8일
업종 : 건설폐기물처리업
주요임원 : 이증열(대표이사), 이금열(경영실권자), 문상태(이사), 김경용(이사), 조길호(이사), 김재국(감사)
주요주주 : 최만기(대표이사), 문상태
상시종업원 : 25명
*2001년 이금열 대표이사 설립. 2003년 조재석 대표이사 취임. 2011년 이증열 취임.

(주)다원환경

설립일자 : 1997년 7월 22일
업종 : 건설폐기물처리업
주요임원 : 이증열(대표이사, 회장 이금열의 동생), 정병관(대표이사), 유원갑(이사), 김동원(감사)
주요주주 : 정병관(대표이사), 박건호(대표이사), 유원갑, 최만기
상시종업원 : 25명
* 97년 (주)대풍산업(대표이사 김의택)에서 2000년 (주)다원환경으로 변경, 이금열(다원그룹 회장) 취임, 2003년 정병관, 2008년 박건호, 2011년 이증열 대표이사 취임

(주)새날

설립일자 : 2003년 4월 28일
업종 :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부동산 임대, 분양 외
주요임원 : 차영수(대표이사), 이금열(이사), 최용익(감사)
주요주주 : 이금열(경영실권자), 최용익, 김계옥, 윤석현
상시종업원 : 7명
*2003년 이금열 설립

(주)이와소종합건설

설립일자 : 2010년 7월 20일
업종 : 건설업 / 주택건설등
주요임원 : 전영관(대표이사), 이선주, 정상철, 최용익

(주)새날씨앤피

설립일자 : 1997년 6월 26일
업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
주요임원 : 조시현(대표이사), 한병철, 채종훈
주요주주 : 이금열(대표이사)
상시종업원: 4명

.
.
.

(주)다원이엔지

(주)비전이엔지

(주)청구

외.

특히 재개발지역에서 폭력의 문제를 심각하게 드러내고 있는 철거업을 하고 있는 다원이앤씨와 이앤아이는 현재 서울시내 25개 정비구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전 계약구역까지 합치면 40군데에 달한다.

<현재 서울 정비구역 중 '다원'의 계약 현황>

(2013.07.19, 서울시 클린업시스템 확인 기준 / 자료제공 노동당 서울시당)

	현 계약구역(25개)	전 계약구역(15개)
다원이앤씨	신길8구역, 염리3구역, 남가좌13구역, 청량리7구역	옥수12구역, 장안시영2단지2차
다원이앤아이	신정1-1구역, 신정2-1구역, 봉천12-2구역, 신림2구역, 신길7구역, 신길11구역, 긴동마을, 용강3구역, 북아현1-3구역, 녹번1-1구역, 효창5구역, 옥수13구역, 금호15구역, 보문4구역, 장위4구역	노량진1구역, 본(동) 5구역, 용강2구역, 가재울4구역, 신당7구역, 금호19구역, 미아12구역, 쌍문1구역
타업체와공동	거여2-1구역, 왕십리1구역, 왕십리2구역, 금호13구역, 길음2구역, 쌍문1구역	까치산공원, 가재울4구역, 신당6구역, 신당7구역, 금호14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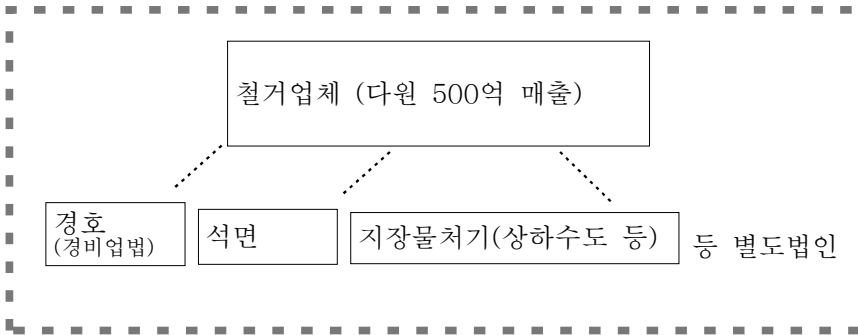
철거용역 업체, 어떻게 움직이나?

2011~12년 유성기업과 SJM에서 씨제이시큐리티, 컨택터스 라는 경비용역업체의 심각한 폭력이 발생, 용역폭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난 5월 일명 '컨택터스법'이라며 경비업법이 일부 개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노동현장에서 나타나는 용역업체와 철거현장에서 나타나는 용역업체는 서로 다른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노동현장에 들어오는 용역업체들이 경호업무를 하는 경비업체라면, 재개발 현장에 들어오는 용역업체는 철거업무를 하는 건설업체들이다.

즉 개발현장에 출몰하는 이들 업체들은 '경비업(경찰청 관할)'을 주 업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가진 '철거업(국토교통부 관할)'을 주 업무로 하는 철거업체들이다. 그리고 개발현장에서의 '용역깡패'에 의한 폭력은 '경비용역'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건설'의 이름을 가진 '철거용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들 철거용역 업체들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기본으로 하는 철거업체로, '경비업' 면허도 가지고 있거나, 별도 법인으로 '경비업'면허를 가진 업체들을 수중에 두고 있다. 이들의 물주인 오너(주로 폭력배 출신)와 CEO인 대표이사 외에 10여명 내외의 영업직원(체대, 법대출신)을 정 직원으로 두고 있다.

철거업체의 구조 (예. 다원 : 총 매출 1천억 이상 예상)



그리고 관리처분인가 전후하여 지역에 ‘이주관리사무소’를 만들어 현장을 어슬렁거리며 이주를 종용하는 현장관리직원은 함바 등의 이권을 노린 지역 폭력배들이 맡으며, 철거업체의 오너가 직접 이들의 매개체가되어 움직인다. 용산참사가 있었던 용산4구역의 경우도 용역업체는 ‘호람’과 ‘현암’이었으나, 실질적으로 지역 ‘이주관리사무소’에 상주하며 주민들을 괴롭히던 이들은 원래 그 용산지역의 폭력배들이었다.

이들 철거업체의 관리 하에 경비업체, 석면처리업체, 지장물(상하수도,전기,가스)처리업체 등이 별도의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행정대집행 등 현장에서 퇴거의 강제집행은 법원 집행계에서 직접 모집하는 형식을 취하나, 실제로 모인 용역들은 일선에서는 밀려난 조폭의 후계들로, 전반적으로 철거업체의 관할하에 선을 대어 모집한다. 집행현장에서 ‘시설경비’를 담당하는 배치 신고 된 경비용역 외에, 바로 이러한 소위 ‘깡패’들이 집행관이라는 ‘일일 공무원’의 형식이나 철거업무를 맡는 ‘철거회사 직원’의 형태로 폭력에 가담한다. 그리고 이들의 업무는 대개 ‘경비업법’의 적용을 받는 경비업무에서 제외된다.

또한 철거업체의 수중에 있는 별도의 경비업체는 사업하나 하고 나서 해체하고, 다른 법인으로 바뀌게 된다. 철거업체에게 경비업무는, 막대한 이득을 가져오는 철거계약²⁾을 수주하기 위한 서비스에 불과하다고 한다. 즉, 철거업체에게 경비업체는 한 번 쓰고 버리는 소모품에 불과하다. 이러한 이유가 경비업 법으로 개별 경비원이 처벌될 수는 있어도 그 경비업체나 그 뒤의 철거업체까지 처벌에 이르지 못한다.

그리고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홈페이지에 공개된 ‘참마루’의 ‘업무법위’에 대한 소개를 보면, 아래와 같다.

2) 지상물, 석면, 지장물처리 등 철거업무와 관련하여 3개월 단기 계약으로 대지 2만평(약 1500세대)기준 5~60억 원 정도 계약함. 마진율 70%에 이룸. 이 오더를 따기위해 경호업무를 수행.

- 1.재개발서업지구내 건물의 완전철거 및 해체공사.
 - 2.사업지구내 모든 거주민의 완전 이주 및 공가관리.
 - 3.사업지구내 이주 및 철거공사를 위한 철거관련 실무.
 - 4.이주 및 철거공사 방해행위에 대한 예방 및 배제.
 - 5.사업지구내 상주경비
 - 6.사업지구내 위험 건축시설에대한 수시점검과 사고예방 및 사후처리
 - 7.공가관리를통한 범죄예방
 - 8.공사에 필요한 유관기관에대한 교섭
 - 9.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등에대한 조치
 - 10.토지수용 및 행정대집행관련 행정업무
 - 11.명도 및 명도단행가처분, 매도청구소송 및 법원 강제집행 실시 대행
 - 12.철거 및 해체된 건축폐기물 일체의 처리
 - 13.공사와 관련된 방음벽 가설 및 이를 위한 터파기 공사
 - 14.도시가스,통신선로,상하수도,한전주등의 이설에관한 대관행정업무 대행
 - 15.철거잔재 반출
 16. 기타 공사와 관련된 업무 일체
- * 참마루 건설 <http://chammaru.net> 업무법위

위 16가지 업무들을 크게 구분해 보면 ‘건물 철거와 관련된 일체’와 ‘거주민 이주와 관련된 일체’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철거계약을 수주하기 위해 (총회장 경비 등)경비업무를 하는 것처럼, 철거계약을 수주하기 위해 ‘이주’업무도 수행하게 된다.

바로 여기에서, 개발지역에서의 주된 일상적 폭력이 발생하게 된다. 사실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대규모의 용역들이 동원되는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사건이 발생하면 큰 폭력사태로 가지만, 대부분의 철거민들이 그만한 규모의 물리력에 맞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충돌의 횟수가 많은 편은 아니다. 오히려, ‘거주민 이주와 공가관리’라는 명목으로, 본격적인 철거가 있기 전부터 지역에 상주하는 ‘용역깡패’들이, 시간마다 동네를 어슬렁거리며, 일상적인 ‘폭력, 협박, 위협, 영업 방해, 성희롱, 방화, 오물투척, 낙서, 통행방해. 모욕, 집단적 어슬렁거림, 시비걸기, (창)문/상하수도 파손....’등의 폭력을 행하는데, 이것이 개발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매우 심각한 용역 폭력의 현실이다. 이러한 폭력은 철거예비행위의 일환으로 실상은 빠른 이주, 내쫓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된 폭력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된 폭력은 대부분 처벌된다 하더라도 경범죄 처벌되거나 (물리적 폭행의 경우) 단순폭행 혹은 (철거민들과)쌍방폭행으로 처리된다. 오히려 철거민들의 저항이 업무방해라는 죄로 즉각적으로 연결되고 더 무거운 형을 받곤 한다.³⁾

3) 2008년 1월1일부터 2011년 8월 30일까지, 철거현장에서 공사 시행·시공자측과 철거민측 등 대한 검거 건수 및 인원을 비교하면, 시행자측은 6건, 14명이 검거된 반면, 철거민측은 14건, 111명 이다.(경찰청/ 국회 행안위 장세환 의원실 2011.10 제공)

합법적인 폭력인 철거폭력과 강제퇴거, ‘안돼! 이제, 그만!’

문제는 이러한 철거용역들의 폭력이 일정한 수준에서 ‘법’의 보호아래, ‘합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2011년 철거 폭력사태가 심했던 ‘명동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에서도, 폭력사태와 관련한 시행업체의 인터뷰를 보면, ‘우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데, 저들(세입자)이 법적인 업무를 방해한다’며 억울해 한다. 이는 현행 개발사업 자체가 사업의 근거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절차법으로 착착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 다수를 차지하는 세입자들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되어도 상관없는 것이 현재의 개발사업의 절차법들이다.

현재의 한국의 개발제도 하에서는 이주와 철거가 구분되지 않는다. 강제 퇴거와 동시에 철거가 이루어지곤 한다.(물론 구청 개발담당자는 지붕이 내려앉아야 철거고 벽에 구멍을 뚫는 행위는 철거가 아니라며 발뺌한다.) 그래서 철거용역들이 퇴거를 중용하기위해 온갖 폭력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이다. ‘시간이 돈’이기 때문이다.⁴⁾ 그것도 어마어마한 돈.

경비용역과 관련한 폭력의 방지는 경비업법의 개정만으로는 개발지역의 폭력의 구조를 단절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우선 경비업법 자체가 시설경비, 요인경비, 호송경비, 특수경비 등을 행하는 ‘경비업체’의 경비업을 육성발전하기 위해 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이라는 것이다. 이는 앞서 살폈듯 개발지역에서는 ‘철거업체’가 철거업무의 일환으로 행하는 철거예비행위 및 이주업가 ‘경비업’으로 구분되기 어려우며, 이러한 이주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일상적 폭력에 ‘경비업법 위반’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주/퇴거’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폭력은, 한편으로는 ‘나갈 수 없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퇴거과정에서 단정한 복장에, 욕을하지 않고, 몽둥이들 들지 않으며 정중히 법원 집행관 입회하에 퇴거가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대책 없이 나갈 수 없는, 쫓겨날 수 없는 이들’은 ‘버틸 수 밖에 없다’. 그러한 ‘버팀’은 업무방해, 공무집행 방해라는 ‘법 위반’이 되고, ‘법의 실현’을 위해, ‘어쩔 수 없는, 필요최소한의 물리력’이 사용될 것이다.

‘이주’를 시키기위해 폭력과 협박이 난무하지만 ‘이주’할 수 있는 대책이 너무나도 부실한 상황에서, ‘폭력’의 근절은 ‘폭력행위’ 자체만을 규제하는 것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때문에 개발사업에서의 폭력은 근절은, 그곳에 살거나 생계를 꾸려가는 주민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되도록 해야만 가능하다.

이제 ‘철거왕’ 다원그룹의 이금열 회장이 체포되어, 다원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대표적 철거폭력 업체인 다원그룹 회장의 비리가, 회장 등 개인의 횡령 비리 사건으로 마무리되거나, 현재 구속 기소된 세무 공무원 몇몇의 뇌물비리로 끝나서는 안 된다. 알려졌듯이 다원 이금열 회장은 재개발 조합에 철거용역비의 10%를 리베이트로

4) ‘시간이 돈이다’는 말은, 용산참사 발생 두달만에 용산 4구역 개발이 재개되었을때, 서울시 부시장이 한 말이다. 참사해결 없는 공사재개에 범대위 대표단의 시장면담 요구하였으나, 부시장이 면담하였고, ‘시간이 돈이다’며 공사를 지연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건네는 관행을 최초로 도입한 인물이라고 한다. 이에 이번 수사는 다원이 담당했던 사업구역들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여, 개발/철거사업의 비리의 정관계 커넥션을 파헤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오늘은 1997년 7월 25일 ‘다원(당시 적준)’ 용역의 방화 살인으로 사망한 전농동 철거민 ‘故 박순덕 열사’의 16주기 추모 기일이다. 그러나 그 다원은 여전히 활개치고 있었다. 용산참사 당시 남일당 건물 2,3층에서 불을 지르던 용역들도 가벼운 처벌만 받고 책임을 면했다.

15년 전 <다원 보고서>에서 철거폭력에 대해 ‘안돼! 이제, 그만!’을 외쳤던 그 외침 보다 더 크게, 우리는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 ‘안돼! 이제, 그만!’을 외치며, <다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고, 강제퇴거를 불법화하는 힘들을 모아야 한다.

다원그룹 수사, 강제퇴거 금지의 계기로 삼아야 정말 처벌되어야 할 것은 강제퇴거

미 류 (인권운동사랑방)

1. 적준의 후예들은 살아있었다

1998년 5월,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철거 폭력, 그리고 적준. 이대로는 안된다!>라는 제목의 워크숍을 열었다. 여기에서 적준용역의 사법처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해 11월 <다원건설(구 적준용역) 철거범죄 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에는 이미 '다원건설'로 이름을 바꾼 적준용역의 실체가 낱낱이 담겨 있었고,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유린의 실상이 자세히 기록되었다. 슬한 폭력의 역사를 여기에서 다시 말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2013년에도 우리는 '다원'을 만나게 되고 있기 때문이다. 폭력은 현재진행형이다.

그런데 15년 전 이미 지적되었던 폭력이 어떻게 지금까지, 심지어 같은 이름의 회사에 의해, 이어져올 수 있었던 것일까. 적준이, 적준의 후예들이 살아있었다는 걸 아무도 잊지 않고 있었다. 다만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아왔을 뿐이다. 최근 수원지검의 다원그룹 수사는 15년 동안 이어져 온 철거폭력 사법처리에 대한 요구가 실현되기 시작하는 첫걸음일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는 재개발 현장에서 주민들이 겪어야 했던 폭력과 삶의 터전을 빼앗아간 강제퇴거에 대해서 다루지 않고 있다. 횡령, 배임, 뇌물 수수 등에 그치는 수사과 처벌은 15년 동안의 바람을 다시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

2. 무엇이 범죄인가

수원지검은 다원그룹 수사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1) 금융기관의 부실을 가져온 행위, 2) 자본 없이 기업을 인수하여 근로자들의 생활터전을 잃게 한 행위, 3)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고용된 직원들로 하여금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한 '갑'의 횡포, 4) 공사비를 부풀려 재건축, 재개발 사업 조합원들에게 과도한 분담금이 돌아가게 한 행위 등을 처벌함으로써 동종 업계에서 이와 같은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그 사업들로 인해 정작 삶의 터전을 빼앗긴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가 없다. 이번 수사에서 드러난 (주)새날의 배임행위는 김포 신곡6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중단되게 된 주요 계기다. 김포 신곡 6지구는 2007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토지 매매가 시작되었다. 당시 시행사였던 (주)새날은 세입자를 퇴거시킬 때까지 매매금액의 10%를 지급하지

않겠다며 토지 소유주들을 압박했고, 세입자들은 아무런 재정착대책도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역을 떠나야 했다. 끝까지 남은 세입자들은 명도소송 등을 통해 강제로 퇴거되기도 했다. 그러던 중 (주)새날은 사업자금 부족으로 더 이상 개발을 추진하지 못하고, 불법적으로 도시개발조합을 구성한 것이 드러나 법원에서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되었다. 아직까지 남아 있는 일부 주민들은, 폐허가 된 지역과 함께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미 떠난 사람이든 아직 남아 있는 사람이든 삶의 자리를 빼앗긴 것은 마찬가지다. 서울 북아현동에서는 사람이 건물 안에 있는 상태에서 건물 철거를 시도해 크게 다쳤고, 신정뉴타운에서는 주민들에게 위협을 가해 개발 사업의 추진에 대해 의견을 모을 기회를 봉쇄하고 있다.

다원그룹은 90년대 내내 재개발, 재건축 현장의 ‘철거와 이주’를 자신의 사업으로 벌여왔다. 최근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은 그들이 ‘철거와 이주’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시행사가 되어 개발 사업을 추진하거나 시공사를 인수하거나 설립하는 등 개발 사업 전반에 개입했다는 점이다. 개발 사업이 ‘공익’을 명분으로 진행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할 경우 사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구조라는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구조가 제도적 변형을 거치면서도 지탱될 수 있는 것은 한국사회가 여전히 ‘강제퇴거’를 사라져야 할 범죄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건축물 또는 토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비자발적으로 점유자를 퇴거하게 하여 점유자가 적절한 법적 보호 또는 그 밖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특정 거주지나 지역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되거나 일할 수 없게 되는 것” 다원이 줄곧 해왔던 핵심 업무인 ‘철거와 이주’가 바로 강제퇴거다. 거주하거나 영업하던 사람을 쫓아내는 일이 너무나 손쉬웠고 국회든 행정부든 지자체든 사법부든 쫓겨나는 사람들의 권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개발은 시작만 하면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사업이 되었던 것이다.

3. 적준의 후예는 다원만이 아니다

철거용역업체들이 말하는 ‘이주’란 사람이 떠날 수밖에 없도록 협박하거나 폭행하거나 괴롭히는 것이다. 이것은 개발 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루어진다. 추진위나 조합 설립을 위해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부터 용역업체가 개입한다. 분담금 없이도 개발이익을 볼 수 있다는 등의 허위 정보를 유포하면서 동의서를 받는다. 조합이 설립되면 반대 의견이 있거나 우호적이지 않은 조합원들을 관리한다. 총회장 경비라는 명목으로 조합 안에서 사업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기 어렵게 만든다. 사업을 재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세입자들을 내보내는 것이 관건이 되므로 동네에 상주하면서 주민들을 괴롭힌다. 영업 방해, 오물 투척, 폭행, 협박, 성희롱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들이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든다. 철거예비행위나 빈집 철거도 주민들을 위협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법원의 명도 판결을 받아 퇴거가 강제로 집행될 때에는 주민의 생명이나 안전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이렇게 사람들이 쫓겨나가는 동안, 경찰이나 지자체는 별다른 개입을 하지 않는다. 경찰은 주민이 크게 다치지 않는 한 그냥 무시하며, 크게 다치는 경우는 단순 폭행으로 조사를 한다. 그 중 기소가 되는 것은 극히 일부다. 철거용역업체들의 모든 행위가 단순하고 사소하

다는 이유다. 하나 하나의 행위는 단순한 사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행위들이 연결되어 이루어지는 강제퇴거는 사소하지 않은 조직적 폭력이다. 그 구조 안에서 강제퇴거가 발생해왔다. 지자체 역시 마찬가지다. 추진위나 조합 설립을 인가하기 위해 법이 정한 수의 동의서가 있는지만 따진다.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보지 않은 채, 각종 인가가 기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사법부 역시 퇴거의 강제집행 권한을 별다른 판단 없이 부여한다. 현행법이 정한 절차를 명시적으로 위반하지만 않았다면, 소유권자인 소유주나 조합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 준다.

법과 제도와 각종 기관들이 이 구조를 보증하고 있다. 법은 소유권 절대주의에 사로잡혀 점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며 사법부는 재판정에서 점유권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 정부는 여전히 개발 사업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실상 사익을 취하기 위해 이용되는 제도를 그대로 두고 있다. 지자체는 각종 인허가권을 가졌음에도 민사상의 문제라며 발을 뺀다. 사람을 빨리 내쫓고 건물을 빨리 철거하는 것이, 사람이 살던 자리에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완전히 거꾸로 뒤집힌 인식이 사회적으로 승인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 속에서 ‘적준’은 술한 이름을 가진 ‘용역업체’들로 살아남았다. 그래서 적준의 후예는 다원만이 아니다. 강제퇴거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지를 입법, 행정, 사법부가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적준’은 언제든지 다른 이름으로 인권침해를 발생시킬 것이다.

4. 다원은 다원만이 아니다

다원그룹에 대한 수사는,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다원은 다원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철거업체들이 다원그룹처럼 개발 사업 전체를 좌지우지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철거업체라도 개발 사업 과정에서 인권침해의 대가로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는 동일하다. 그것은 재개발 과정에서 사라져야 할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고리들을 파헤칠 계기다. 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구조의 실체를 파악하고 강제퇴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용산참사에서조차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문제는 전혀 심판되지 않았다. 검찰은 화재 발생에만 초점을 맞추며 그 이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도시재정비 등의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책무라 할 것이지만”, “권리보호 문제는 입법부나 행정부에서 정책적 논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판단을 회피했다. 지자체 역시 주민들의 항의를 받으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식으로 발을 빼왔다. 그래서 강제퇴거는 한 번도 제대로 심판받지 않았다. 용산 국민법정이 주거권과 생존권 등의 침해에 대해 기소하고 판결한 것은, 더 늦기 전에 심판이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검찰은 다원그룹의 범죄를 횡령이나 비리 이상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현행법에 의한 처벌 여부를 넘어서 폭력의 고리를 낱알이 밝히는 수사가 되어야 하며 해결책을 찾아가기 위한 사회적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다원그룹이 개입한 개발 사업 전반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문제가 발생한 개발 사업 구역에 개입한 철거용역업체와 시공사 등에 대한 특별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입법부와 사법부도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용산참사 이후 발의된 강제퇴거금지법안을 국회는 더 늦기 전에 제정해야 할 것이다. 강제퇴거금지법은 사회가 보장해야 할 인권이 무엇이며 사라져야 할 범죄가 무엇인지를 선언하는 법이다. 누군가 계속 삶의 자리를 잃고 미래를 빼앗기는 상황을 막기 위한 행동은 더는 미뤄져서는 안 된다.

김포 신곡6지구 도시개발사업

조규승 (전국철거민연합 김포 신곡6 상공철대위 위원장)

■ 사업개요

- 위 치 : 고촌읍 신곡리 995-2번지 일원
- 면 적 : 507,273㎡(당초) -> 510,060㎡ (변경, 증 2,787㎡)
- 수용규모 : 3,974세대/11,524인
- 사업방식 : 환지방식
- 시 행 자 : 신곡6지구도시개발조합
- 시 행 사 : (주)새날⁵⁾ (토지소유권 85% 확보)
- 시 공 사 : 신동아건설(40%), 남광토건(30%), 청구(30%) 공동시공
(대구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주)청구'가, 07년 '(주)새날'에 매각됨)

■ 사업 진행경과

- '07. 08. 06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 '08. 04. 21 : 실시계획 인가
- '09. 06. 02 : 환지계획 인가
- '11. 12. 01 : 행정소송 종결
- '12. 08. 03 : 구역지정 해제고시(개발계획수립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 포함)
(2010년, 신동아건설, 남광토건, 청구 -> 워크아웃, 청구 -> 부도)⁶⁾

15만여 평, 4천 세대에 이르는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인 “신곡6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실시계획인가(08년 4월)와 환지계획인가(09년 6월)까지 마쳤지만, 시행사와 시공사의 부도 등으로, 현재 개발계획수립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를 포함하여 최종 구역지정이 해제(12년 8월)되었다. 소규모 공장 및 상가들과 주택들이 있던 동네는 군데군데 철거가 진행되어 파괴된 채, 개발은 멈춰져 있다.

김포신곡마을은 김포톨게이트 바로 앞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특별히 공단지역으로 개발된

5) 다원그룹 계열사 임. 경영실권자 : 다원그룹 회장 이금열

6) 2006년 10월 경 농협을 비롯한 11개 금융회사와 시행사 <새날> 그리고 시공사 남광토건과 신동아건설이 7천억 규모의 PF 대출 약정을 체결, 그러나 시행사 새날이 이자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이룸(2010년 5월)
2010년 시행사 <새날>의 차입금 7400억에 대해 연대보증을 선 신동아건설과 남광토건은 워크아웃이 진행되었고, 새날(청구)는 파산에 이르렀다. (이들 기업의 워크아웃 및 파산은 신곡지구 사업에서의 7천억대 PF 차입금 지급보증 리스크가 결정타 인 것으로 분석됨)

바는 없으나 예전부터 다양한 공장들이 자리잡아왔다. 90년대부터 개발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들었으나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 된 것은 2006년 경이다.

당시 두개의 업체가 지역의 땅을 매입하기 시작했고, 이는 하나의 추진위원회로 합쳐져 매입이 완료되었다. 매입한 땅은 통합추진위원회가 다시 매입하는 과정을 거쳐 총 3차례의 권리이전이 있었다. 통합추진위원회는 또다시 시행사 ‘(주)새날’에게 땅을 매매했다.

시행사 새날은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부지가 넓은 관계로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새날은 시공을 직접 하기 위해 뛰어들었으나 자금난으로 인해 부도가 났다. 현재 신곡마을은 새날의 부도와 이로 인한 조합의 해체로 인해 개발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다.

철거는 2008년 많이 이루어졌다. 250명의 용역을 동원한 강제철거 역시 08년에 이뤄졌다. 매매가 완료된 땅을 중심으로 우선 철거가 이뤄졌고, 철거가 시작된 이후에는 아직 매매가 진행되지 않았거나 철거가 진행되지 않은 공장들 역시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퇴거를 종용하는 용역깡패의 마을 상주 등으로 인해 계약을 맺는 것조차 어려웠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마을을 떠나지 못한 상가 세입자들은 이미 투여된 설비투자비 등으로 인해 손해가 너무 커 제시한 200-500만원의 이사비로는 이주하기 어려운 문제 등에 직면해 있었다.

북아현 뉴타운 1-3 구역, <다원> 철거용역 피해사례

이선형 (북아현뉴타운1-3구역 철대위 위원장)

곱창가게를 하다가 뉴타운 재개발로 인해 강제철거를 당하고 625일째 철거된 건물앞에서 천막노숙을 하면서 잘못된 재개발에 맞서 싸우고 있는 북아현철거민 이선형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겪고 있는 철거용역업체로 부터의 피해 경험과 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속한 북아현뉴타운1-3구역은 북아현뉴타운 다섯 구역중 제일 먼저 진행된 구역입니다. 관리처분인가가 나고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철거용역이 등장했습니다. 철거용역은 재개발조합 사무실에 책상까지 두고 평소 "조합에서 왔다"며 조합 간부로 행사해 오면서 주로 주민들의 강제이주 업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주 업무와 관련해서 필요하면 강제철거를 비롯한 폭력 행위도 불사 하는 것 같습니다.

첫번째 대면

2010년 8월 1일 아현역에 재개발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부착 하던 중 철거 용역들 다수가 낮을 들고와서 무력으로 현수막을 강탈 하고 이에 항의하는 세입자들에게 갖은 폭언과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상황을 조합간부들은 유유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번째 대면

2011년 11월 9일 새벽까지 장사를 하고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오전에 강제명도 집행을 당하게 됩니다. 이를 알고 도착한 저와 동료세입자들 이웃 주민들은 건장한 철거 용역 수십명이 지키고 있어 어떻게 해볼수 없었고 가게 집기류와 식자재는 냉장고에 담긴채 화물차에 던져져 어디론가 실려가고 가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후 법원 재판장께서 영업보상 중재를 해주시기로 한 날까지 기다려 볼 마지막 희망으로 가게에 쪼그리고 앉아 48시간을 있었는데, 화장실도 폐쇄시키고, 철판을 담구던 오물을 바닥에 퍼붓고, 외부의 각종 오물을 가게안으로 채워넣고, 돛자리도 깔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용역들이 지키고 있던 한밤중에 철거용역업체 간부로 보이는 자로부터 구타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세번째 대면

2011년 11월 11일 법원 중재 회의에 모두 가고 여자만 있던 가게 건물을 포크레인으로 허물고 덮쳐 돌더미에 깔리고 대못이 박혀 비명을 지르는데 철거용역들은 폭력으로 끌어내려고만 했습니다. 결국 먼저 끌려나온 식구들이 달려들어 돌더미를 파헤쳐 간신히 빠져 나왔습니다만 거의 실신상태였고 입원 및 봉합수술을 하였습니다.

네번째 대면

강제철거 이후 반과 상태의 건물앞에서 천막을 치고 노숙을 하면서, 서울시와 서대문구청에 민원을 수없이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 못해 대화를 하러 노숙천막에 온 조합간부와 철거용역은 "조합땅 밖이라서 우리와 상관없다. 평생 여기서 살아라"고 큰소리칠 뿐이었습니다.

다섯번째 대면

2013년 4월 11일 새벽 5시 천막에서 잠자던 철거민 포함 농성자 세명을 폭력으로 끌어내 제압하고, 핸드폰을 뺏고, 무릎을 꿇리고, 대가리 꼴아 박아를 시키며 반과상태의 건물을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여섯번째 대면

2013년 4월 11일 폭력과 관련하여 경검의 조사를 받았는데 담당 공무원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잘못된 재개발로 인해 서민들만 고통스럽게 치고 박고 싸우고 있는데, 정부에서 해결을 해야 하는데 참..." 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을 추가한다면,

불법적인 폭력까지 마다않고 업무처리를 하고 월급받는 철거용역들에 비해, 생계를 잃고 쫓겨나고 가정이 파탄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는 철거민들의 삶은 누구에게 보상받습니까?

국회 정부 서울시 각구청 법원 경찰은 더 이상 방관 또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스스로 해야 하는 역할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아래)

그래서 원천적으로 철거용역들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및 정부;

1.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2. 권리금의 법제화

*법원;

1. 조합의 절차상 하자있는 명도소송 관행에 대해서 단호히 각하시켜야.
2. 감정평가 제대로 이루어 지고, 투명하게 공개되고, 납득할만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고 판

결해야함.▶용산참사후 "상가세입자와의 합의가 되지 않으면 영업을 계속 할수있다"고 법 개정이 되었지만, 실제 사법부의 판결은 수용재결후 영터리 감정평가로 책정된 영업손실보 상금이 공탁된 사실 만으로 합의가 된것으로 임의로 판단하고 판결하는 관행 고쳐져야함.

***서울시와 각구청;**

1.공공임대상가 건설. 임시상가 설치등 도정법으로 새로이 제정된 세입자 보호대책을 서울 시 조례화 및 실행.

2.보상협의회등 법적 의무사항을 지켜야 함.(서울시에 한곳도 x)

3.사전협의체(지난 2월에 서울시가 시행)

;돈의문 뉴타운지역의 경우 구청이 서울시 방침을 어기고 상가세입자도 속임, 구성조차 안됨.

;북아현1-3구역의 경우는 한가구 남은 세입자에 대해, 구청이 조합에 구성할것을 지시했지만 조합이 거절하자 구청은 세입자에 통보도 없이 손놓고 있었던 경우

▶서울시는 관리감독 철저히 하고, 주민들에게 홍보도 해야.

4.조합 철거용역의 강제철거등 위법행위에 대해 조정 통제하는 역할을 해야하나, 현실은 각종 뇌물수수료 구청장 구의원등이 구속되는등 한통속인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5.철거신고는 일주일 전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신고 절차도 없이 강제철거한 행위에 대해 "수선행위라서 불법이 아니다"라며 어떠한 행정처분도 하지않는등 강제철거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목격하였습니다.

6.새벽5시 잠자던 사람들 끌어내고 건물 철거를 했는데, 이웃 주민들의 수면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조합과 철거업체에 어떠한 행정처분도 없음.

***검찰 경찰**

용역업체의 폭력행위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해야함. 솜방망이 벌금형.

북아현의 경우, 강제철거 및 폭력현장을 경찰이 보고 방관. 뒤늦게 경찰이 자체 수사를 하면서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게 간단한 조서 한장이 전부. 이후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진술이나 조사도 없이 수사종결. 조합과 철거업체의 치밀한 계획에 의한 범행이지만 용역 개인에게 벌금만 몇십만원 부과. 경비업법 위반으로 경비업체와 조합을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상.

봉천동 1-12구역 주택재개발

봉천동 1-12구역 주민

철거용역 <다원 (구 적준)> 방화살인 희생자, 故 박순덕 열사



박순덕 (당시 34세)

1963년 2월 전북 정읍 출생

1985년 6월 김창수와 결혼, 슬하에 남매

1995년 2월 전농3동철거민 대책위 가입

1997년 7월 25일 철거반대 철탑망루 농성 중,
<적준(현 다원)>소속 철거깡패들이 페타이어 등
으로 방화를 하고 화염병을 투척하자 질식사를
피하기 위해 저항하던 중 불길에 휩싸여 투신, 운
명

1997년 7월 25일 재개발지역인 동대문구 전농3동에서 ‘대책없는 강제철거 반대와 가수용 입주’를 요구하며 철제망루에서 한 달째 농성 중이던 10명의 철거민이 방화에 의해 철탑망루가 불길에 휩싸이면서 18M 높이에서 뛰어내려 박순덕 열사가 사망하고 나머지 철거민들은 온몸이 골절되고 화상을 입는 등 중상을 당하였다.

이날 오전 9시 30분경부터 재벌회사인 선경건설과 재개발조합은 용역회사인 <적준토건(현 다원)> 소속 철거깡패 300여명을 동원하여 전투경찰 600여명이 출동한 가운데 강제철거를 시작하였다.

철거깡패들은 오후가 지나면서 철탑망루 주위에 옷가지와 페타이어를 태워 유독성 연기를 뿜어내 두더지잡기라도 하듯 농성중인 철거민들의 질식을 기도하였다. 그러면서 철거깡패들은 살금살금 철탑망루에 다가가서 철거반의 화염병 투척 등에 의한 화재를 막기위해 철거민들이 1층에 설치해 놓은 방벽을 커터기로 뜯어내고서 옷가지와 페타이어들을 그 안으로 집어넣었다.

오후 6시 30분이 되자 철제망루 밑에서 검은 연기를 내뿜는 불기둥이 치솟아 순식간에 철탑망루를 뒤덮었다. 이 과정에서 박순덕 열사는 18M 망루에서 뛰어내려 사망하였다.